

#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62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7. 8. 31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사유

「아동복지법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구·군에 아동위원을 배치하여 지역 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아동위원의 위촉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아동위원의 임기 및 역할(안 제3조 및 제6조)

-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즉시, 아동복지업무담당부서 또는 해당 동에 알림
- 관할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담당공무원과 상호 협조
-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, 후견인 등

나. 아동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(안 제8조 및 제9조)

-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에 관한 사항 심의
-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소관 국장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.

라. 입법예고 : 2007. 7. 10. ~ 7. 30.(20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.
2. “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”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.
3. “보호자”라 함은 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
제2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

제3조(위원의 역할)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 즉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아동복지 업무 담당부서 또는 해당 동에 알림
2. 관할구역내의 아동상담과 지도를 아동복지담당공무원과 상호 협조

3.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
4. 가정위탁 보호아동,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
5. 가정위탁 보호아동,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
6. 기타 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 처리

② 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,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위원의 위촉)** 위원의 정수는 20명 이내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

1.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
2.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

**제5조(위원의 해촉)**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·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
2.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

**제6조(위원의 임기)**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**제7조(위원의 배치)** 위원은 동별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 동의 인구수와 아동수의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.

### 제3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회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에 관한 사항
2. 아동복지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반기·하반기 각 1회 소집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4장 보칙

제12조(수당 등) 구청장은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,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